

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김경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87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10월 15일

발 의 자 : 김경우, 경만선, 권수정,
권영희, 김경영, 김용석,
김제리, 김화숙, 박기재,
서윤기, 신정호, 양민규,
이상훈, 이영실, 이정인,
이준형, 이호대, 임종국,
장인홍, 조상호, 채유미
의원(21명)

1. 제안이유

-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바,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서울시 보육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.
- 또한 보육교직원의 노동 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「서울시 보육 조례」 제21조로 간략히 명시되어 있어 보다 구체화되어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.

2. 주요내용

- 가.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.(안 제3조)
- 나.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5조)
- 다.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7조)

- 라.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,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함.(안 제8조)
- 마.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보육교직원”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,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,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·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.

2. “피해 보육교직원”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.

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하여는 「영유아보육법」에서 사용된 용어 정의에 따른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4.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,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「서울특별시 보육 조례」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제6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,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

있다.

제7조(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3.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「서울특별시 보육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보육정책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
2.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
3.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
4.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
5.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

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, 자치구,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.

문서번호

2021101500000012

미첨부 사유서 (1호)

요청인 : 보건복지위원회

담당 : 조도형 과장
이원상 팀장
이혜린 예산분석관

접수일 : 2021.10.15

회신일 : 직접입력

내용문의 : 02-2180-7955

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예산정책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제7조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, 인권침해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제8조에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

※제8조제1항제2호, 제4호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과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기추진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에서 제외(2021년 보육교직원 교육지원 사업은 코로나로 인하여 미실시)

-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기추진 사업 2021년 예산 642,237천원(붙임참고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

-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831,000천원으로 연평균 166,200천원임
- 추계의 전제
 - 보육교직원 실태조사비용은 서울시 유사사업을 준용하고 3년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
 - 기존에 운영 중인 교직원 권익보호 사업 외에 서울시 전체 보육교직원 중 500명에 대하여 심리상담을 1년에 3회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
 - 온라인 홍보는 1년에 분기별로 4회 시행하는 것으로 전제
 - 비용은 2022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
 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총 비용(합계) ≍ 831,000천원
 - 총 비용 = 실태조사비용 +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지원사업+ 보육

교직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	합 계
세입	-	-	-	-	-	-
소계 (a)	-	-	-	-	-	-
세출						
제7조 (실태조사비)	22,000	-	-	22,000	-	44,000
제8조 (상담 및 심리안정지원사업비)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750,000
제8조 (인식개선 홍보비)	7,400	7,400	7,400	7,400	7,400	37,000
소계 (b)	179,400	157,400	157,400	179,400	157,400	831,000
총비용 (b-a)	179,400	157,400	157,400	179,400	157,400	831,000

○ 보육교직원 실태조사비용 ≙ 44,000천원

$$= 22,000\text{천원} \times 2\text{회}$$

※ 2021년 노동공정상생담당관 감정노동자 인식 실태조사비 22,000천원

○ 고충상담 및 심리적안정 지원사업비 ≙ 750,000천원

$$= \text{보육교직원}500\text{명} \times 3\text{회} \times 100\text{천원} \times 5\text{년}$$

※ 사설기관 심리검사 상담비 100천원

○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비 ≙ 37,000천원

$$= \{350\text{천원} \times 4\text{회 (분기별 1회)} + 2\text{천원} \times 3,000\text{부}\} \\ \times 5\text{년}$$

※ 온라인 홍보물 제작비 350천원,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비 2천원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조도형

추계세제팀장 이원상

분석관(주무관) 이혜린

☎ 02-2180-7955

e-mail : lovelyynn91@seoul.go.kr